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7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나경원
이인선 · 김태호 · 구자근
고동진 · 박충권 · 안철수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,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.

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,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과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,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

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·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 하고,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·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”를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력이 급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,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·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·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